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27.

발의자 : 안규백 · 이용득 · 전현희

전혜숙 · 이수혁 · 신창현

김진표 · 권미혁 · 김상희

박정 · 윤후덕 · 김병기

김성수 · 설훈 · 임종성

송옥주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,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.

현행법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에 대하여 징역 2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.

이에 별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별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,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18조).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
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중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별 칙)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<u>1천만원</u>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	제18조(별 칙) ----- ----- ----- <u>2천만원</u> ----- -----.